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31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문금주・이정문・김승원

허성무 • 주철현 • 이개호

서삼석 · 조계원 · 이광희

이원택 · 정진욱 · 어기구

김 윤 • 이용선 • 김남근

김문수 의원(16인)

제안이유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략'을 발표하고 후속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제고와 동시에 우량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하지만 위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수행되었는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업보호구역에 한해 최장 8년 동안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한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의 제함(안 제6조).
- 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 광 집적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 우선 구매, 컨설팅 지원, 송·배전설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정책자금의 지

- 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형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 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 조).
- 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 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발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와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와 부지를 말한다.
-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에 적 합한 설비를 말한다.

-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7.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란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 농촌경 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영 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조성사업(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
 -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 전사업등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 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들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법」 제28조에 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하 "농업진흥구역"이라 한다)을 제외한 농 지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영농계 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 2. 제1호의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조합·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4.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 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4.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결정하 고 발생한 수익금의 3배의 범위 이내에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 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파단되는 경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지정 등

- 제10조(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문제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이하 "집적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적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집적화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지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집적화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인구감소지역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 이라 한다)내에서 집적화지구 조성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로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화지구 조성사업이 실 시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별 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조성사업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화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 또는 소유하는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및 집적화지구 활성화 등

- 제12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기 우선구매 등)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을 통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신설하여야 한다.
- 제14조(컨설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 및 발전시설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의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송·배전설비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사용을 위한 표준 시설 및 설치 규격과 표준 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 시할 수 있다.
- 제1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대양광 발전사업등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 첨단 영농기술 개발 및 스마트 팜 조성
- 4.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농업인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작권 상실, 경제적 피 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보호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집적화지구 개발이익 공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또 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영농형 태양광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정책수립 지원

- 2. 영농형 태양광 교육, 컨설팅 및 홍보
- 3. 관련 국내 · 외 기관과의 교류 · 협력
- 4. 제12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5. 집적화지구 개발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6. 집적화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와 관한 업무 지원
- 7. 그 밖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예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
- 제22조(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 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농형 태양광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규제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규제 혁신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3.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조성사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10명 내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된다.
- ④ 그 밖에 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설비와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감독에 관한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대행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벌칙

- 제2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등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3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